

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

제정 2021.04.05

1차 개정 2022.02.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에 대한 양질의 교수·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제시
2. 원격교육매체 개발 및 제작 지원
3. 원격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교수자 교육 지원
4.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 <개정 2022.2.28.>
5. 학습관리시스템(LMS) 및 기타 원격수업용서비스(클라우드서비스 포함) 유지 관리
6. 원격수업과 관련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7.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

제3조(조직)

1. 센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센터에는 책임교수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는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.
4. 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원격수업관리위원회) ①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장이 맡는다.
2.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3.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·학생·관련전문가 10명 내외를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4. 위원은 원격교육지원에 관련한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5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6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팀원으로 한다.

③위원회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원격수업 콘텐츠의 수정 여부에 대한 평가

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지, 수정, 보완, 재제작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요청 받은 부서 및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, 보완, 재제작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위원회) 원격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교수들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국고와 교비회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기타)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